KCMI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1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마.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자본시장연구원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동화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예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0/1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19조 제2항 제8호 신설)

— 제118조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 신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가상자산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방지)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2026/10/1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이 시행(2026.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제1조, 제3조)

—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신설(제5조)

—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고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말함

□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에 따른 규정 정비(제6조, 제9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에 따른 규정 정비

3) 관련 규정 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2026/10/1 개정 · 시행)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제1조, 제5조, 제6조,제8조)

-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규정 효력에 대한 법원 결정 · 판결 시 조치 근거 마련)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회원제재금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
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인출담당자 등록 의무)
마.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자기매매회원 중 비실물사업자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이용 명확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10/2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대한 상장규정의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이 있는 경우 상장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규정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판결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6조 제3항, 제48조 제14항)

—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규정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 · 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거나 효력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형식 상장폐지에 관한 규정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 · 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26/10/2 개정 · 시행)

—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5항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6/10/1 개정 · 2026/10/2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제재금의 감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규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제재금의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별표 1 제4호 가목 및 라목)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회원의 경우 과징금 수준 등을 고려한 회원제재금 감면 가능 조항을 삭제

— 산출된 회원제재금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재량 감경 근거를 마련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2026/10/26 개정 · 2026/12/14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매입 채널 다변화의 일환으로 KRX금시장을 통한 금지금 매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거래 · 보관 및 결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매매회원 중 비실물사업자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이용 명확화(제3조 제1항 제15호, 제88조 제1호)

—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신속한 시장참여를 지원하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 합리화

□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금지금 보관요건에 따른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제50조 제1항, 제52조)

— 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한정되던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대상에 한국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계좌 개설범위 확대

- 임치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하고자 금지금을 임치하여 관리하는 계좌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 :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제78조의2에 따른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계좌

□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에 따른 분리보관계좌 간 계좌대체 허용(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분리보관계좌간 계좌대체를 허용 하되, 제78조의2의 협의대량매매에 따른 임치계좌로부터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로의 계좌대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반환 및 인출 대상 계좌 명확화 등

• (반환대상 계좌) 분리보관계좌 중 임치계좌

• (인출대상 계좌) 분리보관계좌 중 한국은행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 혼합보관계좌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 매매거래 체결 방식 명시(제75조 제3항, 제75조 제6항, 제78조의2 제3항)

— 증거금제도 적용 및 금지금 매수가능범위 규정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의 장내 경쟁매매 또는 협의대량매매로의 매도 금지

• 한국은행의 매도수요가 없는 점 및 외환보유고 금지금의 구분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내매도에 따른 혼합보관체계로의 전환을 제한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를 통한 협의대량매매 방식 규정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 결제방식 규정(제89조 제3항,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제2호 나목)

— 한국은행의 KRX금시장 거래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활용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결제지시 · 결제금지금 인도 대상 계좌에 한국은행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 추가

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6/10/26 개정 · 2026/12/14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은행의 KRX금시장 참여관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인출담당자 등록 의무(제27조 제2항 및 제28조)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의 인출담당자 등록의무 규정 및 혼합보관계좌의 인출담당자와의 구분 명확화

• 인출담당자는 사용할 인감 등을 사전에 보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인출담당자는 관련 업무의 수행 시 자신이 인출담당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패용하여야 함

□ 한국은행 전용 보관계좌 인출 반영(제30조 제3항)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 폐지 시 처리방법 명시

• 폐지되는 보관계좌에 금지금의 잔량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 또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금지금을 처분하거나 반환·인출받아야 함

□ 금지금의 인출 시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제32조 제1항)

—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을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 범위에 반영

• (기존)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 (개정) 자기매매회원은

□ 한국은행의 금지금 인출방식 명시(제32조 제8항)

— 협의대량매수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에 보관된 금지금 중에서 매수 시기가 빠른 금지금의 순서대로 인출하며, 임치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임의의 순서로 인출

□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의 계좌대체 처리순서 규정(제51조 제1항)

—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매도에 따른 계좌대체는 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서 한국은행금지금결제계좌로, 한국은행금지금결제계좌에서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로 계좌대체되는 방식으로 함

□ 기타 조문 정비

— 한국예탁결제원의 금지금 반환 · 인출지점 폐쇄 반영(제31조 제2항 마목 및 제3조 제2호)

— 적격수입금 대상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변경사항 반영([별표 2] 2호)

마.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2026/10/26 개정 · 2026/12/14 시행)

1) 개정 이유

□ KRX금시장의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신속한 시장참여 및 거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호가입력프로그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을 명확화

— 현행 운영규정 상 은행 및 한국은행(제13조 제2항 제2호, 제3호)은 자기매매회원으로 시장참여가 가능하나,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은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 근거가 불명확

2) 주요 내용

□ 자기매매회원 중 비실물사업자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이용 근거 마련(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1항)

—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 정의에 실물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자기매매회원으로 이용범위 합리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투자광고 사전심사 대상 추가 및 자체점검 의무 부과)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 마련)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협회 투자광고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광고위원회 설치 · 운영)
라.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투자광고 사후 관리 및 온라인 채널 운영자 투자광고 규율 강화)
마.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시 CCO 역할 강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6/10/15 개정 · 2027/1/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 상품 다양화,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추진

•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금감원·협회 보도자료, 2026.9.1)

2) 주요 내용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실시 가능한 투자광고 중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광고에 대해 협회 사전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근거 마련(제2-42조)

—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온라인 채널(MTS,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하는 광고 중 추가되는 협회 사전심사 대상은 시행세칙으로 위임하여 자율규제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 협회 심사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한을 현행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연장

□ 온라인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 부과(제2-42조의2 제2항)

— 현재 금투회사는 영업점에서의 투자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정성 점검 실시

• 금융투자회사는 점검인력, 투자광고물 파급력 및 광고건수 등을 감안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온라인 투자광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허위 · 과장광고 대응 강화를 위해 상시 신고체계 구축(제2-42조의2 제4항)

—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협회의 '허위 · 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설치 · 운영을 의무화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6/10/15 개정 · 2027/1/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 상품 다양화,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추진

•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금감원·협회 보도자료, 2026.9.1)

2) 주요 내용

□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투자광고(제3조)

—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자체 채널(유튜브 등) 내 일부 동영상 광고를 협회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단, 실시간 진행 광고는 제외)

— 신규 상장 ETF(상장 후 1개월 이내) 및 고위험상품(장내파생 · ELW) 관련 동영상 광고 등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6/10/15 개정 · 2027/1/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 상품 다양화,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추진

•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금감원·협회 보도자료, 2026.9.1)

2) 주요 내용

□ 협회 투자광고 심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광고위원회' 설치 · 운영

— (구성)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언론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협회 · 업계 · 소비자 ·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위원장이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 구성

— (역할) 협회의 광고 심사 정책 등 주요사항 및 자율규제위원회 ·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등 결의

— 투자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규 · 부당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 사회적 물의 야기, 중대, 경미, 단순 위규행위로 판단기준 구체화

라.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2026/10/15 개정 · 2027/1/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 상품 다양화,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추진

•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금감원·협회 보도자료, 2026.9.1)

2) 주요 내용

□ 투자광고 사후 관리(제46조 제4항 신설)

— 투자광고 시행 후 실제 광고물과 사전 심사를 받은 광고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투자광고 규율 강화(제46조 제4항 신설)

—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계약 등에 따라 투자광고를 제작 · 게시 또는 배포하는 자(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투자광고의 관리 · 감독 사항

• 광고안, 게시매체·기간 등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전 확인

• 온라인 채널 운영자에 대한 투자광고 관련 준수사항의 전달 및 그 준수 여부 확인

• 광고안, 심사자료, 게시화면 및 점검결과의 보관 및 관리

□ 대외제공 정보의 정보의 투자광고 해당여부 사전 검토(제90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대외적으로 정보 제공 시 매매 유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광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마.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026/10/15 개정 · 2027/1/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 상품 다양화,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추진

•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금감원·협회 보도자료, 2026.9.1)

2) 주요 내용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시 CCO 역할 강화(제23조)

— 광고 의사결정의 객관성 ·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회사는 광고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